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2020. 2. 1. 제정

2020. 11. 1 개정

<연구지원1팀>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소속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문화 정착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원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석·박통합과정 및 수료재학생 포함) 중에 있는 연구자를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통합관리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4. “연구책임자 등”이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 학생연구원,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본교의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및 처우 보장,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6.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책임자의 역할) 연구책임자는 신의와 성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 체결
2. 학생연구원 지도
3. 연구수당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4. 학생인건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5.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준수
6. 위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제6조(학생연구원의 역할) 학생연구원은 신의와 성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사항
2.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의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으로 변경 신청
4. 위 각 호의 부수되는 사항

제7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8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통합관리계정이 아닌 경우 및 연구환경을 고려하여 과제 기간에 따라 참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을 활용할 때에는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활동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연구원의 처우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1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100,000원
3.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 월 2,900,000원

제14조(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기관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제15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체결한 연구참여협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참여협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 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③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로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관리) 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점검) ① 관리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8조(인격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20조(안전 보장) 관리기관은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1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① 연구책임자 등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관리기관은 학생연구원 본인이 참여하는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23조(고충·상담 창구운영) ① 관리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온라인 신문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은 학생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처벌·제재)
- ①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등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관리기관 및 교내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생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팀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 및 관련 부서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운영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수정, 별첨 1 반영)

[별첨1]

연구참여확약서

1. 학생연구원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호	

2. 계정책임자

성명		과제번호	
소속 (학과명)			

3. 참여정보

3-1)

- 가. 참여기간 :
 다. 월 참여율(%)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

4. 기타 확약사항

-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원은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학생연구원 (전자서명)

계정책임자 (전자서명)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